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68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21.
3.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자진신고자 등으로서 행정처분을 감면받은 자가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7년 이내에 행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생략)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 ----- ----- ----- -----7년-----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4조제1항1)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이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1)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감경·면제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주는 제도를 말함.²⁾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99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형태로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었으며, 2013년에는 형사 고발 면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됨.

□ 일반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행위자들 간 은밀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경쟁 당국에 협조하도록 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공동

2)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공정거래백서」, p.228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을 쉽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1,105건 중 자진신고로 적발된 사건이 669건(60.5%)에 달할 만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정책적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비판도 제기됨.³⁾

- 따라서 현행법⁴⁾에는 자진신고자로서 감경을 적용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시 감면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감면 제도를 적용받은 자가 관련 재판에서 조사과정의 진술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약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7년 이내에 새롭게 부

3)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자는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214803)

4)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경우 다시 감경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로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또한, 감면 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경영리스크가 증대하므로 기업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일시적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경영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다만,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의 축소는 자진신고의 유인 및 독려를 줄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이를 몇 년으로 둘지에 관한 사항은 입법 재량의 영역으로 보임.⁵⁾
-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리니언시 감면 제한 기간을 법문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처벌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때 신고인의 재범 이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판단 재량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음.

5)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 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 부당한 공동행위로 재적발된 사업자의 수에 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의 입법 영향을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2026년 4월에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대책’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 대책에는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감면 적용을 받은 기업이 5년이 지나더라도 10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담겨 있어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 유사하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109